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68.2	40	0.2
	부단체장		28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03	203	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166	52	12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49	
	의원국외여비		19	
지방보조금		14,879	14,499	380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617	617	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-	845	-
공무원 일·숙직비		-	224	-

- ▶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s.go.kr>)

☞ **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산출**
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기초) : 당해자치단체 전년도기관운영업무추진비*(1+0.003)
- 전년도 기관업무 추진비 : 군수 나군)39600천원 부군수 나군)27500천원
 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202,000천원

☞ **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출**

지방의회 관련 :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*(1+0.297) +
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*(1+0.176) +
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*(1+0.05)

-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간 평균액 40,000천원
의회운영업무추진 최근 3년간 평균액 42,000천원
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간 평균액 62,000천원

2018년 세부내역

- 의정운영공통경비 : 의원 1인당 6,500천원*7명 +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1,000천원*6명
- 의회운영업무추진비 : 의장 2,500천원 *1명*12월 + 부의장 1,200천원 *1명*12월 +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,600천원
- 의원국외여비 : 의원 1인당 2,700천원*7명

시책업무추진비 : 기준액(203)의 20%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

☞ **지방보조금 기준액** :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

☞ **통이반장 활동보조금**

- 리장 수당(34명) :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%,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(월2회)
- 반장 수당(110명) : 50천원 * 110명

※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,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.